

가정상담

10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22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elawhome>



본소 교육부에서는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 간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족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를 실시했다. (관련내용 22면)



본소에서는
9월1일, 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법교육을,
9월 4일에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30면)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별기고 | 친생부인의 허가과 자녀의 출생등록권
- 10 • 판례정리 | 가사 사건 최신 대법원 판례
- 1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⑨
- 18 • 가정폭력상담실
- 22 • 교육부
- 26 • 인터넷 상담
- 27 • 좋은 책
바깥은 여름
- 28 • 결혼과 인생(188) 영화 이야기
어느 가족 _ 김용인
- 30 • 상담소 소식
- 34 • 지부 소식
- 36 • 상담통계
- 37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백일홍〉

이 달의 메시지



더 이상 ‘양육비’에 대해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창립 62주년의 해를 보내고 있는 상담소는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법률상담을 통해 가정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꾸준히 한 길을 걸어 두 세대가 흐르는 역사를 지나왔습니다. 그 역사 안에서 가부장제 아래 여성차별의 근간이 되었던 동성동본 금혼, 호주제 폐지 등의 패거를 이루어냈고 혼인을 저하, 이혼율 상승 등 우리 사회에서 가정과 인구문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체감하면서 문제 제기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 양육비 문제는 상담소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상담소는 일찍부터 이혼가정과 자녀 양육의 문제에 주목해 왔으며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난 2001년 창립 45주년을 맞아 ‘양육비 제대로 받고 있는가’라는 선명한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는 본격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문제 제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인은 물론 이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시도하여 양육비 협의 방법, 액수, 기간, 수령 여부, 면접교섭 등에 대해 폭 넓은 기초 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법의 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해 양육비의 국가 선급 및 액수의 현실화, 전담 기구의 설치 등을

꾸준하게 요청해 가시적으로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2년에는 마조리 필즈 뉴욕주 판사를 초빙하여 ‘이혼가정의 자녀 보호·양육비·친권·양육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고 이어 200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안과 부부재산제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담소의 노력이 2015년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이혼가정이 증가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가정에서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 중 일방 특히 양육친이 모인 경우 비양육친인 부모부터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이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정도였고 그러한 상황이야말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 기구를 설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소에서 2001년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여년에 걸친 이러한 노력은 양육비 전담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이 기구를 통해 10만 여건의 상담, 1만 5천 여 건의 접수가 이루어졌고 3,297건의 양육비가 이행되었으며 그 액수는 약 3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든 비혼이든 한부모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녀의 양육을 담당 하는 것은 여성이 많고 이 경우 여성 혼자서 경우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결과적으로 양육비는 양육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비양육친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이나 비양육친은 지금도 여전히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혼이나 비혼 모두 본인의 삶에 대한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이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지 않거나 혹은 혼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의 경우 내 쓸 것 다 쓰고 나 할 것 다 하고 나서야 준다는 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줄 수 있는데도 주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양육비란 자녀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며,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법적인 의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부부는 이혼을 해도 부모 자녀 관계는 평생 여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권’ ‘양육권’이라 말하지만 여기에서 ‘권’은 부모 된 자로서의 의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하여 협의이혼 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관련한 협의를 필수로 하는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었으며 상담소에서도 양육비 이행 관련 소송구조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사람들의 의식 또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양육비에 관해서 만이라도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의식과 제도의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허가와 자녀의 출생등록권

김 상 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결정은,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모가 그 자녀를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법구조가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에 민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여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제844조 제1항·제3항. 이 점에 있어서 개정법은 개정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ii)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지만,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는 달리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제854조의2 제1항 본문). iii)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없다(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모나 모의 전 남편이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미루어야 하며, 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된 후에야 비로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자녀는 모의 혼인외의 자가 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전 남편은 부(父)로 기록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정법 규정은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규정과 조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자녀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 제1항: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법 규정과 같이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여 심판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물론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하기 전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의 전 남편을 자녀의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의 전 남편이 아버지로 등록되며, 모나 모의 전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정 전과 아무

런 차이가 없게 되므로, 결국 개정의 의의가 상실된다).

2.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받으려면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또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61조의 2),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야 심판이 확정된다(즉시항고 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예컨대 전 남편)와 청구인(예컨대 모)이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확정되면 비로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위와 같은 과정을 고려해 볼 때 법원에서 아무리 신속하게 심판을 한다고 해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마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때부터 심판이 나올 때까지 보통 6~7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이 친생자관계의 부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문제의 본질은 친생부인의 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출생신고 기간의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3.

개정법의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듯이(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이 세상에 태어난 아동은 누구나 출생 후 신속하게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국의 법률은 출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생신고 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볼 때(독일 7일, 프랑스 3일, 일본 14일 등) 이례적으로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기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1개월이라는 기간 내에도,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개정법에 따라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이제 모는 그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을 통하여 그 자녀와 전 남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모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규정을 신설하였다면, 법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와 국회가 친생부인의 허가 규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출생신고 기간이 조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개정을 강행하였다면, 아동의 복리에 대한 기본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외국(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나라들의 입법례에 나타난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i) 모가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남편을 자녀의 부(父)로 규정하며, 포태의 시기가 혼인 전이라도 관계없다(출생시 기준의 원칙). ii) 따라서 모가 이혼(혼인 취소, 무효)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종료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고 해도, 전 남편은 그 자녀의 부가 되지 않는다. iii) 다만 남편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모가 남편의 사망 후 300일(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는 306일(네덜란드) 내에 자녀를 출산한 때에는 사망한 전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가 된다. iv) 위의 나라들도 예전에는 이혼 후 일정한 기간(스위스: 300일, 독일, 오스트리아: 302일, 네덜란드: 306일) 내에 모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이루어진 개정에 의해서 전부 삭제되었다.

그 이유로는 i)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모가 이혼 후 출산한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낮다는 점(오스트리아 신분등록관청의 조사에 따르면 이혼, 혼인 취소, 무효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모가 출산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인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 약 95%의 자녀는 전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자녀로 밝혀졌다),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가 이혼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할 경우,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부인 판결을 받아 자녀의 신분등록부를 다시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나라들에서는 이혼 후 출생한 자녀는 일단 법률상 부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도 부는 기록되지 않는다. 법률상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생신고 이후 생부(전 남편 또는 제3자)의 임의인지 또는 부자관계를 창설하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발생한다.

5.

2017년에 개정된 우리민법 제844조 제3항은, 개정 전과 다름없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여기서 혼인관계 종료란 이혼, 혼인취소 등으로 인한 생전의 종료와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한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가 이혼 후 300일 내에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민법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그대로 존속시킨 결과(이에 따라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전 남편의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출생신고 의무자인 모(또는 모의 전 남편)가 출생신고를 할 때 그 자녀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

개정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남편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을 미루고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아 모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판절차를 거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출생신고 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혼 후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전제로서 그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을 폐기하여야 한다.

우리민법체계상 친생자는 크게 혼인중의 자와 혼인외의 자로 나누어지는데, 이혼 후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면, 그 자녀는 모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가지게 되므로, 그에 상응하여 모와 전 남편의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모가 이혼 후에 출산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자녀의 신분을 모의 혼인외의 자로 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민법의 문제점은 이혼 후 출생한 자녀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규정하였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모순된 규정을 하나의 법체계 내에서 무리하게 짜 맞추다 보니, 결국 출생신고를 미룬 상태에서 재판을 통하여 자녀의 신분을 혼인중의 자에서 혼인외의 자로 변경시킨 후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해결방식은 자녀의 기본권인 출생등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문제를 먼저 경험한 외국에서 개정민법과 유사한 입법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른바 선

진국에서 이와 같이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의 입법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자녀의 출생등록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아니다. 자녀의 출생등록권을 침해하는 친생부인의 허가 제도(인지의 허가 제도에도 같은 문제가 있다)를 마련한 법무부와 이를 아무런 논란 없이 통과시킨 국회는 이 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녀가 출생한 후 6개월 내에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의 수가 몇 가지인지도 스스로 알아보기 바란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가사 사건 최신 대법원 판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반환예외 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판단 기준 등

1. 존속폭행의 상습성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가. 판결요지

- 상습존속폭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습벽 외에 존속폭행의 습벽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
- 피고인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그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

나. 사실관계

- 폭행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계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친모를 1회 때린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포괄하여 상습존속폭행으로 기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계부에 대한 부분은 상습폭행을 인정하면서도 존속을 폭행한 습벽은 없다는 이유로 친모에 대한 부분은 단순존속폭행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

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함

- 대법원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4조의 ‘상습’의 의미를 위 규정에 열거된 상해 또는 폭행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함

2. 탈취아동 반환청구

- 대법원 2018. 4. 17. 선고 2017스630 결정

가. 판결요지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인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 기준
-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3조). 한편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등으로 양육

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건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4항).

- 법 제12조 제4항 제3호의 반환예외사유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복리가 침해되어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익이 일방 부모의 양육권이나 절차의 신속성 등 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대한 위험에는 청구인의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일방 부모에 대한 잦은 폭력 등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와 상거소국에 반환될 경우 오히려 적절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반환청구를 받은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도 그 위험의 정도와 반복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아동의 반환 전후 양육에 관한 구체적 환경, 반환이 아동에게 미칠 심리적, 육체적 영향 등 기타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권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와 반환이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 일본에서 거주하던 여성이 남편의 폭력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이주하자, 남편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기해 아동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남편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자녀가 목격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녀들만 돌아갈 경우 겪게 될 심리적 고통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반환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을 긍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함

3.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가. 판결요지

-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상속인에게 개정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야 한다.
-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

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그렇다면 종래와는 달리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통합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외에는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세율을 정할 때 상속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에 관한 세율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이유가 없다.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나, 이것은 통합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

-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실관계

- 원고 등이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세율인 1천분의 28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에 관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서와 마찬가지로 2010. 3. 31. 지방세법 개정 전의 취득세 세율에 해당하는 종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4.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

가. 판결요지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에 반하여 친권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행위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 미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그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행위의 효과가 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나(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참조), 그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누구도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의 증명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사실관계

- 甲이 친권자로서 원고 등을 대리하여 원고의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한 다음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乙은 다시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친권을 남용하여 체결된 것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피고가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5.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므4963 판결

가. 판결요지

-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으로 모자 관계가 개별적으로 공시된 후의 입양의 효력
- 입양은 기본적으로 입양 당사자 개인 간의 법률행위이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7므25 판결 참조). 구 민법(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입양의 경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형식상 잘못이 있어도 입양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망인에게 원고 1과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 의사, 즉,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입양이 불성립, 무효, 취소, 혹은 파양되는 경우에는 망인도 피고를 입양할 의사가 없었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입양 신고 대신 피고에 대한 위 친생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후, 2008. 1. 1.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로 기록되었고,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망인이 피고의 모로 기록되었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개인간의 법률행위인 입양의 효력, 입양의 의사로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실관계

- 망인이 A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원고 1과 상의하여 피고를 데려와 함께 키우다가, 피고를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하여,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원고 1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고,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후 망인과 피고 사이의 모자 관계를 개별적으로 공시함
- 대법원은 망인과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를 부인한 원심을 파기함

6. 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가. 판결요지

-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직접상대방인 외국인에게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실관계

- 중국 국적 여성인 원고가 한국 국적 남성 A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A에게 가족부양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사유로 거부당하자, 원고가 거부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원심은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청구 인용)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적격을 부정하여 파기자판하면서 소를 각하함

7.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가. 판결요지

-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다1791 판결 참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 참조).
- 따라서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는 비록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그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사실관계

- 甲이 乙과 혼인하여 丙을 출산한 다음, 乙과 이혼하고 丁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 등을 출산하였는데, 甲의 사망 후 丙이 甲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음 戊에게 매도함
- 대법원은 원고 등과 甲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丙의 부동산 처분 이후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丙, 戊에게는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원고 등이 丙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함

8. (1979.1.1.)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의 특별 수익 고려 여부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가. 판결요지

-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1979. 1. 1. 시행)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을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을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

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

원심이 위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나, 위 부동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9. 유족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774 판결

가. 판결요지

-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

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2항 본문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는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기간의 최초 3개월 이내의 비용만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여기에서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란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다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사실관계

- 어선원인 망인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뇌경색증이 발병되어 하선한 후 요양치료를 받다가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사망하였고,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유족급여를 청구하자 피고가 어선원재해보상법 제27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함
- 어선원 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어선원재해보상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 대상은 요양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

백국현 공익법무관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여성백인회관 건립 (1)

1976년 5월 10일 여성백인회관 기공식

12월 여성백인회관 준공

여성백인회관 설립을 위한 발기총회 이후 순조롭게 모금이 진행되는 듯 했으나 이른바 '3·1 구국선언'과 관련하여 3월 5일 이태영 소장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3·1 구국선언'은 윤보선, 함석헌, 정일형, 김대중, 이문영,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 함세웅, 이우정



씨 등 재야 민주인사들이 유신체제와 박정희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규탄하는 '민주구국 선언문'을 삼일절을 기해 발표하였던 것으로 이 소장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소장은 연행 5일 만에 풀려났지만 회관 건립 기공식을 목전에 둔 상담소로서 이 사건의 파장은 엄청난 것이었다. 상담소는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간 지연되었던 건축허가신청서를 4월 9일 서울시에 냈으며, 그 달 28일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1976년 5월 10일 여성백인회관 기공식이 거행되었다. 기공식장에서는 백인회관 건립의 주역들인 10인클럽, 17인클럽을 포함 백인회원, 일반회원 및 많은 여성계 인사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했다. 많은 축복 속에 기공식은 거행되었으나 넉넉하지 않은 자본으로 건축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을 진행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이어졌다.

건축실행위원회는 1976년 5월 29일 공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에 곽영훈(환경그룹), 전명현(흥익전문대), 김낙춘(충북대) 씨를 위촉하였다. 그리고 이 소장과 자문위원회 설계사 등이 연석회를 열어 각 건설회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검토한 후 공사비 절감을 위해 일괄 발주 방식에서 벗어나 골조, 내장, 전기, 창호, 설비 등 각 공정의 분할발주 방식을 택하기로 결정하고 세대건설 합자회사에 골조공

사를 맡겼다.

개별발주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경비 절감을 위해 공사 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난항이었으나 그 와중에서도 상담은 계속 되었기 때문에 공사와 상담 모두를 조금이라도 원활하게하기 위해 상담소는 1976년 6월 20일 신축공사장 바로 옆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500호 삼영빌딩 학원장학회관 1층으로 이사까지 해야 했다. 예정보다 약간 늦었으나 12월 19일 내장공사가 끝남으로써 드디어 완공을 보게 되어 이 해 12월 31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기공식 당초의 예정으로는 건축비가 1억 5천 만 원 가량이었으나 완공된 이후 계산된 총 공사비는 2억 1천 만 원에 달했다.

시련과 보람, 영광이 교차했던 1976년도 지나가고 상담소는 우뚝 선 6층 건물의 '내 집' 을 가지고 1977년을 맞이했다. 1977년은 완공된 여성백인회관의 보수공사와 회관의 개관 기념행사 준비로 시작되었다.

편집부





음주 후 귀가하여 고성과 욕설 이를 싫다고 하는 자녀나 부모 폭행 등 가정폭력 전문상담과 집단상담 통해 음주문제 및 폭력에 대한 행동 교정 이루어져

사건번호 2017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2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딸) 전화상담 1회 등 총 15회

상담기간

2017. 5. 18. ~ 2018. 1. 23.

상담경과

행위자는 2016년 12월 사건당일 늦은 시간 음주 후 귀가하여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고 이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며 말리는 피해자(딸, 대학2년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코피를 흘리게 하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사건 당시에는 주취상태여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고 경찰이 찍은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다.

행위자는 처음에는 신고한 피해자에게 조금 화가 났지만, 젊은이들이 자기 보호를 확실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가졌다. 사건 후 행위자와 피해자는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다. 한편, 행위자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한 적은 없지만 말로 상처를 준 사실은 인정하였고, 음주문제에 대한 상담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행위자는 수원에서 자영업을 하는 관계로 주간상담이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이에 주간에 진행되는 음주문제상담에 가능한대로 참석하도록 하였고, 이후에는 야간에 진행되는 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 개선을 가장 긴요한 문제로 생각하였으며, 상담 이전에 비하여 음주횟수가 줄어드는 등 음주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행위자의 언행에서 폭력성도 줄었다고 하였다.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행위자와 배우자 관계 모두 회복되었으며 상담 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사건번호 2017버4** 특수협박,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2회,
라오니 캠프 1회,
부부상담 3회, 부부집단상담 8회,
자녀 미술심리집단상담 8회 등 총 29회 실시

상담기간

2017. 7. 19. ~ 2018. 1. 22.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9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9세, 7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7년 2월 사건당일, 라면을 먹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시끄럽다며 면박을 주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베란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가져와 들어올리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과 본소예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결정 받았다.

초상담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폭언과 무시를, 피해자는 행위자의 음주문제와 경제적 무책임을 꼽았으며,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남편(아버지)이 되고 술을 줄이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는 절대로 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포용력과 감정조절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need가 강하였다.

부부는 개별상담 및 부부상담을 거쳐 부부집단상담에 참석하였고(자녀들은 미술심리집단상담), 피해자는 라오니 캠프에도 참석하였다. 부부는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고 부부집단상담에서는 부부의 일상과 관계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맞벌이 부부로, 항상 아이 둘을 데리고

부부가 함께 왔고 일용직인 남편은 상담이 있는 날에는 상담시간을 비워놓고 나머지 시간에 일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부는 상담 중에도 늘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시종일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러한 모습이 자주 다른 참여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존중받기를 원했고, 친구를 만나는 등 외출을 하면 몇 십번 전화를 걸어 귀가를 재촉할 때 힘들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일상의 계획이나 귀가시간 등을 명확히 말해주고 같은 방에서 잠자기를 원하였다. 또 피해자는 행위자를 사랑하고 이혼하고 싶지 않지만 행위자를 자꾸 이기고 싶어 하는 자신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쳐서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되도록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 삶 속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피해자도 상담 초기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아도 고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중기부터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치고 싶지만 잘 안된다고 하는 등 변화를 보였다.

부부 모두 상담초기에는 이혼의사도 있었으나 상담종결 시에는 이혼의사를 접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다짐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에 만족하였다. 행위자는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을 후회하였으며 폭력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건번호 2016버2***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음주문제상담 6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 (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7. 24. ~ 2018. 1. 2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6년 되었고 부부 사이에 2녀(16세, 15세)가 있다. 행위자는 2016년 10월 사건당일, 전일 피해자와 다투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과 과거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싱크대 안쪽 문에 있던 약 25cm되는 칼을 꺼내들기 세로 잡고 ‘이걸 죽여 버려 이씨’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신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워왔고, 생활비를 직접 관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법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면서 행위자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는 등 가사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행위자의 우선 해결과제로는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의심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설사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용서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거론하고 협박하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혼인파탄의 유책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부부 모두 이혼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가 상담에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상담 과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 이 야기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지만 지금은 1주일에 2회 정도로 술을 많이 줄인 점이 가장 큰 변화이고, 대화법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자녀들과의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그동안 피해자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많이 다투었으나 쉽게 변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수

용하여 덜 다투게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으며 부부관계도 많이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집1**보호처분집행감독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9회, 음주문제상담 6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1회 등
총 24회 실시

상담기간

2017. 7. 27. ~ 2018. 1. 2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2016년 6월 결혼하였고 부부 사이에 1남(2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7년 2월 사건당일, 직장생활하는 피해자가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냄비,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거실바닥에 던져 손괴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책과 장난감 등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며,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에 강간미수로 송치되었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관할 법원 내의 아동가족상담센터에 상담위탁 되었다. 그러나 행위자가 서울에서 거주하게 되어 보호처분 수탁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동 법원은 행위자를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하는 보호처분변경결정을 하였다.

행위자는 사건 발생 후 2017년 6월말 경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초상담에 임할 당시 이혼숙려기간 중이었다. 자녀의 친권자는 부부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양육은 피해자가 맡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월 80만원을 행위자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상담기간 중 행위자는 성실하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0월 중순 예정대로 협의이혼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초기에 상담의 목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에 앞서 무엇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할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고 하였고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상담이 유익하였다고 하면서 결혼 전 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과 피해자는 여러 가지가 너무 달라서 같이 지내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혼을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비폭력적인 갈등해결방법을 인식하게 되었고 향후 폭력재발가능성도 희박하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혼은 차선책으로 불가피하였고, 자신의 생활을 잘 관리하면서 피해자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과 상담종결 후에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바4** 존속상해,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들)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5회, 집단상담 8회,
교육강좌 3회
등 총 20회 실시

상담기간

2017. 8. 30. ~ 2018. 2. 28.

상담경과

행위자(40세)는 부모 및 형과 같이 살고 있으며 행위자와 형 모두 미혼이다. 행위자는 2017년 2월 사건당일 오후, 술을 마시고 원룸을 얻어 줄 테니 나가살라고 말하는 피해자

1(아버지)에게 냄비를 집어던져 머리를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때려 머리 부위 전체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자신을 타이르는 피해자2(형)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찢어져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피해자1이 술 마시고 주사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1이 주사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폭력을 하였지만 그 사실을 반성하였다. 행위자는 일이 일정치 않고, 우울하며, 술에 의존하는 정도도 심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상담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했다. 피해자1과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지내고 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았다.

행위자는 먼저 음주문제상담에 참여하였는데, ‘애어른’ 등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개념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래 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말에 처음에는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과연 그랬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집단상담 초기에는 소리를 낮추어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이나 욕을 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이러한 집단분위기를 경험한 것이 신선한 경험으로 마음에 남게 되었다. 행위자는 상담의 경험이 매우 좋았고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에 참여하면서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술 마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1의 음주도 많이 줄었고, 행위자와 피해자1, 2간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행위자가 지방으로 일을 가면 피해자1의 음주 빈도가 높은지 어머니가 행위자에게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으면 행위자는 바로 집으로 온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특별한 취미가 없어 주말에는 바깥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장차 취미활동이나 여가시간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하는 등 우울감도 상당히 극복하게 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교 육 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우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닌 척 하면서도 외출이 꺼려지고,
육아스트레스로 아기도 밉고,
그런 내가 또 한심해서 이런 나 자신도 미웠는데...”

- 일 시 : 2018년 9월 28일(금) ~ 9월29일(토)
- 장 소 :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50명, 자녀 49명
조은경, 박소연, 천다라 상담위원(한국가정법률상담소)
오지현과장, 이재근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은정 차장, 주거복지상담사(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재광 강사(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애란네트워크 직원 및 탁아 자원봉사자 등 총 145명
- 후 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청명한 가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본소에서는 비혼모 50 가정과 함께 에버랜드로 1박2일 캠프를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필요한 건강보험, 주거 및 법률 관련 강의와 상담을 받았고, 에버랜드 내에 있는 홈브릿지 캐빈호스텔에서 숙박을 하며 에버랜드 최고 인기 시설인 사파리월드에서 Q-PASS로 입장하여 관람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놀이시설 자유이용 및 야간페스티벌 등을 관람하였다.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비혼모 가정에 꼭 필요한 정보와 상담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와 즐거운 추억을 쌓았으며, 다른 비혼모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프로그램 개관

1.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사 : 오지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경제적 빈곤 등으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보험료를 체납한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결손처분제도 및 체납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면제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 가정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강의와 상담이 있었다.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사 : 박은정 차장(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를 하였다. 강의 이후 강사는 주택임대차 재계약상의 유의사항, 임대주택 신청자격 여부 등 참가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른 개별상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임대주택과 관련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알게 되었고, 특히 강의 후 전세임대에 관련한 상담에 많은 호응을 보였다.

3.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엄마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들은 연령별로 반으로 나뉘어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각각 활동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기 아동들(8세~13세)은 노재광 강사(웃음치료전문가)의 진행으로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팀을 나누어 ‘강사 따라하기’, ‘가위 바위보 팀 대항전’, ‘종이탑 쌓기’ 등의 게임을 하며 어색함을 풀며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팀 구성은 나이를 고려하여, 2-5-6학년 팀과 3학년 팀으로 나누어 긴장감 있는 게임을 진행할 수 있었다.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은 각 팀에 배치되어 아동들이 질서를 지키며 게임이 진행되도록 강사를 보조했다.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



에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하고, 친구, 동생, 형, 누나,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높이고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적극성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4. 「비혼모 가정을 위한 법률 상담」

▷ 강사 : 조은경, 박소연, 천다라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에버랜드 오후 체험 이후 저녁시간에는 상담위원들이 비혼모들의 각 방을 방문하여 개별 및 집단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다. 비혼모들이 그동안 궁금해 왔던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등 비혼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채무 관련한 파산 및 면책 상담이 많았다. 상담 후에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를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5. 「용인 에버랜드 체험」

참가자들은 교육 참여 이후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파리 월드’와 그 밖의 다양한 시설과 공연을 관람하며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호스텔에서 숙박하면서 다음날 오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점심식사 후 해산 하였다.

○ 참가자들이 필요한 지원 및 바라는 점

어려운 점

1. 경제적인 문제, 소득의 불안정, 육아로 안정적인 구직이 어렵고, 소득이 적음.
2. 양육비청구하면 100%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됨.
3. 아이 돌봄, 사이버대학 수강 중인데 아이 육아로 집중이 어려움.
4.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되어 육아수당을 지급받는데 어려움.
5.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자녀 교육비가 걱정됨.
6. 주거문제, 전세임대로 살지만 SH전세임대는 집을 구하기 힘들고 보증금도 부족함. 월세부담과 임대계약 기간 만료 때마다 적은 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기 너무나 어려움.
7. 학업(졸업)과 상급학교 등록금, 의료비가 걱정됨.

바라는 점

1. 법개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원, 정부의 양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되길 원함.
2. 시설에서 독립했을 때 아이 돌봄과 자립 활동 등에 대

한 지원을 받기를 원함. 비혼모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심리적 압박이 큼.

3. SH 전세임대 보증금을 신혼부부나 청년들 대상과 같이 1억 2천까지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전세 계약 시 절차를 간소화 해주기 원함.
4. 직업교육 및 교육비 지원
5. 경제적 소득이 생기면 한부모 가정에서 탈락되어 주거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 개선을 원함.
6. 소송구조(인지, 유전자검사, 양육비 청구 등)의 확대 등

○ 정리

사회적·정책적으로 비혼모들을 위한 많은 제도와 지원이 늘어났으나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가운 시선 속에서 비혼모들의 고통이 여전함을 상담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비혼모 가정이 겪고 있는 법적·경제적·제도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이들이 당당히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 인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본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었다.

조은경 상담위원

참가자들의 소감

- 방△△

힘들고 지친 생활에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우릴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닌 척 하면서도 외출이 꺼려지고, 육아스트레스로 아기도 밟고 그런 내가 또 한심해서 이런 나 자신도 미웠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아기가 투정을 부려도 전혀 화가 나지 않던 신기하고도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하루빨리 자립해서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오늘처럼 아이의 손을 잡고 경험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 김 △△

처음 에버랜드 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을 때 무척 설레고 기대가 되었지만 곧 내가 임신부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 에버랜드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강의는 교육이 아닌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신다는 생각에 든든하였고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아 다행이었다. 에버랜드에 도착해서도 임신부라 다 즐길 수는 없었지만 오랜만의 나들이에 사람구경 동물구경들을 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다보니 뱃속의 아이도 반응을 해주어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꼭 다시 와서 구경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김 ◇◇

일하는 엄마라 아이와 여름방학 때도 나들이 한번 가지 못하고 추석 연휴때도 아이와 제대로 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모처럼 아이와 즐거운 나들이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던 의료보험 체납문제와 계약기간 만료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거주거복지관련의 강의는 저에게 크나큰 단비 같은 정보였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살아가는데 도움 될 크나큰 희망을 안고 갑니다.

- 황 00000

아이가 가보고 싶어 했던 에버랜드였는데 매년 일 때문에, 비용 때문에, 거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에버랜드에 가고 싶다는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 에버랜드에 가게 되었다고 알려주니 기뻐하는 것 보다 먼저 “엄마 이번에 회사 쉴 수 있어?”라고 묻는데 그동안 내가 아이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새삼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정말 에버랜드 가는 거냐고 묻는 딸아이를 보며 이렇게 가고 싶은 에버랜드였는데 가자고 말도 못했구나 생각하니 미안하고 또 미안하며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매년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절망스럽지만 이번 캠프로 새로운 희망과 기운을 얻고 일상으로 돌아가 아이와 또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이에게 꿈같은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00

‘뚝, 뚝’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이 방문을 두드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두 가정까진 아닌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실지 몰랐거든요. 모처럼 나온 나들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일부러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오신 거 같아 감사했습니다. 방으로 개별 방문을 해 주시니 개인적으로 드러내기 힘들었던 사정을 진술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궁금했던 점들을 즉각 상담해 주셨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하면 도움주시겠다는 말씀에 힘이 되었습니다.

- 임00 엄마

지난봄에는 임신부의 몸이라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여쁜 공주님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아기와의 첫 나들이가 설레고 행복하긴 합니다. 특히 그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아이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유전자검사를 받게 하여 아빠를 밝혀낼 수 있을지, 검사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 아빠로 밝혀지고 나서 친권,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만 하던 것을 시설 내 선생님들이나 누구에게도 자세히 물어 보고 의논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이런 고민을 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이로부터 자세히 듣고 의논할 수 있어 정말 감사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미혼엄마들이 가정 법률문제에 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어도 자세히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궁금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정법률상담소 문을 두드리면 된다는 것을 널리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000

열 살 아이는 밤 10시인 지금도 집에서 나올때 새벽 6시 30분과 같은 얼굴입니다. 싱글벙글~ 까르르~ 잠도 잊은 것 같은 아이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밤입니다.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익명

아이 곁에 오래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오늘 조금이라도 보상해준 거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 홍 *엄마

일하는 엄마들이 모두 그렇듯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나들이 하는 동안 우리 아이가 부쩍 컸구나 새삼 깨닫고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 C *엄마

사랑하는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며 한없이 행복해 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칩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시 쉬고 있지만 저도 언젠가는 좋은 강사가 되어 이런 훌륭한 캠프에 후원자가 되길 꿈꾸고 희망해 봅니다.

- 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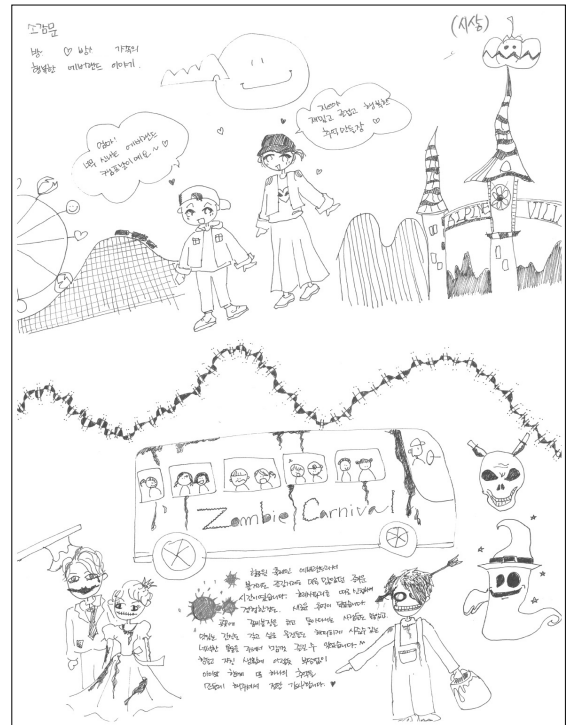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와의 첫 나들이인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도 하고 꽃도 보고 즐거운 기운이 가득한 곳에서 충전된 시간이었습니다.

- 이000

신나게 놀다 잠들어서도 웃고 있는 아이를 보니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익명

항상 00원 안에서만 생활하다가 밖으로 캠프를 처음 와서 기분전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 김△△

방마다 찾아와서 법률상담을 해주는 프로 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참여한 비혼모 가정의 아이가 쓴 소감문입니다.

소감문 (비L & 000) -엄마는 안 쓰고 내가 다 썼어요.

♡ 에버랜드에 가기 전

오늘은 에버랜드에 가기로 했다. 원래는 8시50분까지 00원에 도착했어야 하는데 시설에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늦어서 차가 우리만 빼고 갈 줄 알고 마음을 졸였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와보니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진짜로 우리만 빼고 놀러 가신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늦게 온 것이었다. (^.^)

♡에버랜드에 간 후

에버랜드에 도착을 했다.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입장을 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예쁘고 잘생긴 알바생 언니오빠들을 보니 무슨 연예인을 본 것 마냥 신이 나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우린 엄마랑 미리 받은 Q패스라는 우선 탑승권을 써서 빠르게 줄을 서지 않고 사파리를 탈 수 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탈 수 있었다. 에버랜드 놀이구가 짱 재미있었다. 기분이 참 좋다. 나중에 또 오늘처럼 놀러오면 좋을 것 같다.

인·터·넷·상·담

저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성년이 된 딸이 한명 있으며, 그 동안의 제 고통을 보아온 딸은 제게 이혼을 권유하였고 저는 이에 용기를 얻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에 대한 제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저와 남편 모두 판결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가 지나기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1심 판결에 따른,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판결은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A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의 계속 중 배우자의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수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한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됩니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 2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각 참조). 소송의 계속은 판결의 확정 등으로 소멸되는데, 남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나지 않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판결문 중 이혼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다만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 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 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 143 판결).

따라서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은 그 효력이 없으나, 위자료 판결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남편의 상속인은 딸과 귀하이므로, 귀하와 딸이 남편의 재산은 물론 위자료 채무를 상속받으며, 귀하가 상속받은 위자료채무는 그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여 혼동으로 소멸합니다(민법 제507조 참조).

김민선 변호사

바깥은 여름

김애란 지음
문학동네, 2017

사실 다른 책에 대해 쓸 예정이었고 어떻게 시작할지도 많이 생각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 서서 신문을 들추어보다 '세대론적 반성'을 경계하는 칼럼 하나를 읽고서는 시작할 부분을 놓쳐 버려서 - 내가 쓰려던 글의 시작이 흔하디 흔한, 뻔하디 뻔한 세대론적 반성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 봄에 읽었던 이 소설집을 다시 소환해 보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이 작가에 대한 평이 좋았고 이 책을 여럿이 추천해 주었는데 한 동안 장르소설을 제외하고는 소설 특히 한국 젊은 작가들의 소설을 거의 읽지 않다가 오랜만에 읽은 소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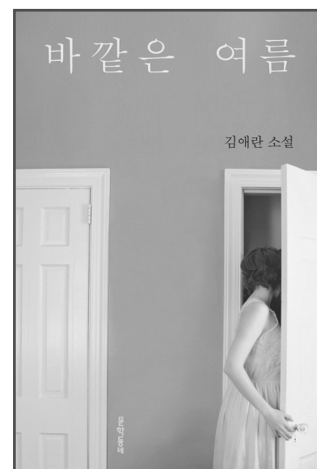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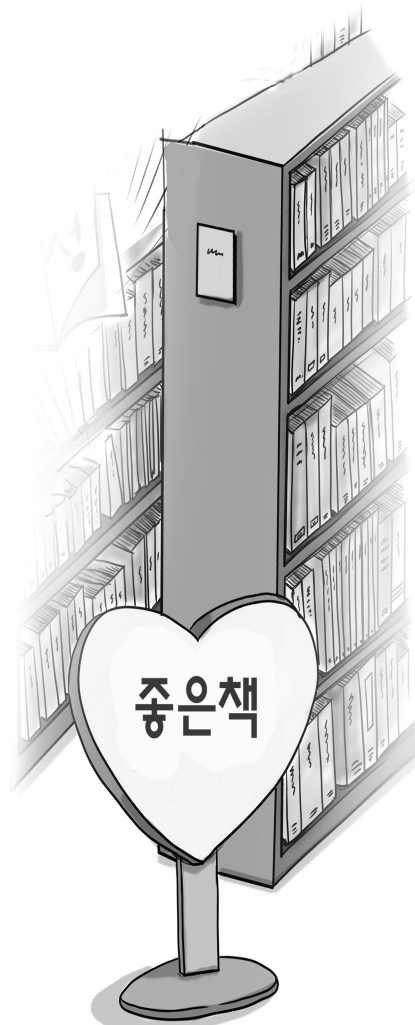
보통 수록작 가운데 한 편을 제목으로 하는 관행과 달리 작가 김애란은 이 소설집에 작품 가운데 한 문장인 '바깥은 여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안에선 하얀 눈이 흩날리는 데, 바깥은 온통 여름일 누군가의 시차를 상상했다"는 문장이 「풍경의 쓸모」라는 수록작에 있다. '바깥은 여름'이라는 문장만 보면 나는 온통 초록 혹은 아스팔트가 녹아낼 것 같은 무더위 그림에도 무엇인가 열정 넘치는 젊음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포함한 작품은 '바깥은 여름'이라고 말하는 누군가의 그렇지 못한 '안' (춥고 쓸쓸하고 시린)을 들여다보도록 한다. 이 소설집에 실린 7개의 작품들은 대체로 이렇듯 그저 무탈해 보이는 누군가의 한 겹을 살짝 들추었을 때 그곳에 있는 쓰린 상처를 보여준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에서 사고사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어쩌면 남편의 그 사고가 '삶'에 뛰어든 것인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희망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작품들은 한결같이 상실과 상처 그리고 어쩌면 사랑하는 이의 결코 보고 싶지 않은 냉정하고 나쁜 모습을 생각하게 한다. 표면을 보여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과 이면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의 소명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무언가를 잃은 뒤 어찌할 바 모른 채,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 『바깥은 여름』 속 여러 인물들이 나누어 가진 질문이기도 하다. 「노찬성과 예반」에서 병으로 강아지를 잃고 혼자 남겨지게 된 아이 노찬성의 상황과 연이은 아이의 선택이 너무 그럴법해서 더 안타까웠다. 혹은 한 시절을 함께한 연인에게 이별을 고한 여자(「건너편」) 그리고 「가리는 손」이 가리키는 겹겹의 편견과 부당함과 또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어떤 진실 앞에서의 망연함 같은 것이 그러하다.

작품 하나를 읽을 때에는 막막하고 망연 자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집 전체는 『바깥은 여름』이라는 제목이 처음에 던지듯 따뜻한 무엇이 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삶과 타인에 기대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짐작해 볼 뿐이다.

작가 김애란은 「침묵의 미래」로 제 37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이는 역대 최연소 수상으로 화제가 되었고, 이 소설집 『바깥은 여름』에 실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로 제8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결혼과 인생 (188)



어느 가족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안도 사쿠라, 릴리 프랭키, 키키 키린,
마츠오카 마유, 조 카이리, 사사키 미유



오사무(릴리 프랭키)는 때때로 건설 현장 막노동일을 하고 자주 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생계를 이어간다. 그가 아들 처럼 데리고 다니는 소년 쇼타(조 카이리)는 자신이 '주워온' 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또래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도둑질 기술만 늘어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진 않는다. 오사무와 함께 부모 노릇을 하는 여자 노부요(안도 사쿠라)는 세탁 공장에서 일하며 씩씩하게 생계를 꾸린다. 이들이 머무는 집의 실질적인 주인 할머니 하츠에(키키 키린)는 연금과 더불어 전남편의 자식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 전남편 자식의 딸인 아키는 자진해서 하츠에 옆에 머무르며 유사성매매업소에 일을 나간다. 어느 추운

겨울밤, 오사무와 쇼타는 상처투성이 얼굴로 베란다에 갇혀 있던 어린 소녀 유리(사사키 미유)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유리를 데려온다. 그리고 뉴스에는 소녀 실종 사건이 등장한다.

2018년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어느 가족>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작 <아무도 모른다>(2004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년),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년)에서 일관되게 질문했던 가족의 의미를 깊숙하게 파고든다. 하츠에의 집에 모여 사는 이들 중 그 누구도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에 그들은 '가족'일 것이다. 부모, 자식, 동생, 어머니로 구성된 '정상' 가족. 사실,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들은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자주 훔치지만) 밤에는 집에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수다를 떨다가 몸을 맞대고 잠이 든다. 그들은 서로의 상황을 걱정해주고, 아이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폭력 앞에 분연히 맞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닌가? 여기에 혈연이라는 요소가 없다고 해서 그들은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될 수 있는가? 갓난아기 쇼타를 버리고 어린 유리를 학대했던 부모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름대로 정성껏 돌보고 맛있는 걸 먹이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 기술'을 알려준 오사무와 노부요 중 누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함과 사랑받는 느낌을 알려



주었나?

한 명의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혈연으로 이어진 소규모 가족도 탄생한다. 하지만 그렇게 탄생한 가족이 영원히 유지되진 않는다.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 가족은 '선택'의 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부부가 되는 과정 역시 '선택'의 행위가 아닌(많은 경우 '운명'이라고 주장되지만), 서로의 단점과 약점에 대해 분노하고 상대방을 쉽 없이 모욕하고 괴롭히며 또 그에 고통 받는 걸 감내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납 받지 못할 모종의 악덕과 거짓말로 촘촘하게 짜인 장(場)이라 할 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의 안위와 미래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에 따른 크나큰 희생마저 감당하면서 상대방에게 동시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기려 하지 않는 사람들. 가장 친밀한 관계는 그렇게 재설정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단 여섯 명의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구성원들 하

나하나의 개인사를 통해 가족이라는 기존 신화에 대해 다각도로 질문을 던진다. 잘 짜인 캐릭터로부터 이야기가 절로 흘러나온다고들 하는데, 바로 이런 각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가족>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을 꼽으라면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아키와 관련된 장면일 것이다. 안정적인 중산층 가정 출신인 아키는 자세히 부연되지 않은 가족 내 어떤 갈등 때문에 가출하여 절연한 채 살아간다. 돈을 벌기 위해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인위적인 보호막을 걷고 나오는 순간 젊은 여성이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자신의 육체를 전시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문을 느끼지 않고 '이건 일일 뿐'이라는 '쿨한'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다가 자신의 단골손님과 모종의 교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그와의 접촉을 피한다. 그 직전까지 감독은, 투명한 가림막 뒤에서 관음 하는 남성들의 시선 앞에서 '여학생 코스프레'를 하며 가짜 오르가슴을 연기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다소 기괴하게 잡아냄으로써 현대인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듯하다가, 갑자기 투명한 가림막을 걷어내고 낮선 남자에게 따뜻한 손을 건네는 아키의 행동이 그런 소통의 단절을 적극 거부하는 작은 승리처럼 묘사한다. 그 장면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생각하는 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화합의 의미가 아주 많이 퇴색한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상·담·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

9월 1일 과천시 양성평등축제 한마당,
9월 4일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
9월 15일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 참여

임시 총회 개최

본소의 임시 총회가 지난 9월 7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 날 임시 총회는 차명희 이사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지난 회의록 낭독,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안건으로 지난 6월 21일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본소 이사 및 감사 유임 건과 개정 인사 규정 승인의 건을 인준하였다. 이 날 총회에는 공증을 위해 서성원 변호사가 참관하였다.



본소에서는 9월 1일, 4일, 15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출장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9월 1일에는 과천시 중앙공원에서 열린 양성평등축제 한마당에 참여하여 법교육과 함께 '과천여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여성문제 전문 상담'도 진행하였다. 가정문제의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가족법개정을 위한 서명,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양성평등'에 관한 주제로 에코백 그리기 체험은 특히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높았고 모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하였다. 가족법 개정운동으로 참가자들에게 자녀 성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담부스에서는 사전 예약자와 현장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이혼, 상속, 임대차 등의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직원 7명과 자원봉사자 20명, 그리고 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법교육(209명), 서명(380명), 법률상담(11건)이 있었다.

9월 4일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열린 서대문구 사회복지박람회에서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가족법개정운동과 함께 법률구조 및 본소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법상식, 상담소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자녀성변경, 비혼모부양료청구 등의 설명을 통해 가족법개정 서명운동을 하였다. 행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상담소에서 무료로 가정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고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소개시켜줘야겠다고 하였다. 가정법률 상담소 직원 8명과 자원봉사자 1명, 그리고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법교육(150명), 서명(550명)이 있었다.



9월 15일 관악구청에서 열린 다문화가족박람회에서는 '법교육 및 무료법률상담, 각종 게임 활동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관악구 다문화가족박람회에는 특히 가족단위의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베트남, 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의 다문화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참여

도 많았다. 본소에서는 가족법상식, 상담소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가족법개정 서명운동을 하며, 참가자들에게 법률퀴즈와 풍선 나눠주기, 에코백 그리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하였다. 가정법률 상담소 직원 9명과 자원봉사자 10명, 그리고 7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법교육(200명), 서명(500명)이 있었다.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용회복 상담 및 교육 실시

본소에서는 9월 4일 2018년 서울시 노숙인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여 노숙인의 신용회복 및 가족 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 서비스 안내 및 가족법 개정운동을 위한 서명을 받았다. 본 행사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특별시청 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채권채무, 임대차, 이혼, 상속 등의 법률 상담과 함께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

상담 및 무료법률구조(파산면책)까지



명을 받고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법률상담을 받은 이들은 상담소에서 무료로 파산 및 면책 등의 신용회복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5명과 자원봉사자 4명, 그리고 411여명의 노숙인들이 참여하였다.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및 행정사무관 본소 방문

지난 9월 13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 김현원 과장과 최수영 행정사무관이 본소를 방문하였다. 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중 매주 목요일 야간에 진행되는 행위자 집단상담, 부부집단상담 및 동반자녀를 대상으로 한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참관한 후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및 차연실 상담위원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대 현장실습 연수 (9/7-11/16)

권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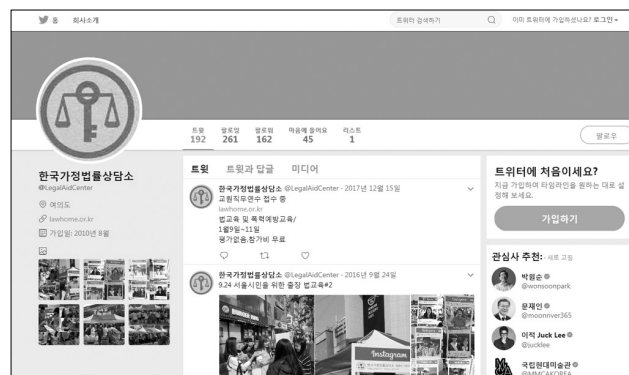
출장법교육

- 9.1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 과천여성비전센터
김진영 상담위원
- 9.5.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 서대문복지박람회
최수진 상담위원
- 9.15.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 관악구다문화가족박람회
복미영 상담위원
- 9.20. 강서지역자활센터
- 신용회복 및 가족법교육
조은경 상담위원
- 9.28. 학교폭력예방교육 - 고명경영고
정다혜 상담위원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연,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5일 서울가정법원 조정에 참여하였다. 14일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국가족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에서 파탄주의 도입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18일과 19일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진행된 2019년 및 2020년 사업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8일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무자 간담회회가 본 상담소에서 열렸는데, 본 상담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과 최수진·유혜경 상담위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한광동

차장과 양인실 주임이 참석하여 양육비 법률구조 사건 처리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20일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서울권역 정기회의에 참석하였고, 27일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참석 등

곽배희 소장은 9월 6일 '사랑의 친구들' 설립 2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고 13일에는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18일에는 본소에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에서 법률구조와 가족법에 대해 강의 했다.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5시
-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상담

- <http://www.lawhome.or.kr>
- [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http://www.miznet.daum.net(가정법률))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9시~오후 5시

● ● ● 고맙습니다

2018년 9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태주, 문동주, 박수열, 박은정, 손태홍,
신수경, 안서연, 윤원섭, 이승주, 조진형, 주소희,
진보라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장철진,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변호사 님

• 학생 자원봉사

강명주, 강민재, 고원지, 김소미, 김초원, 김현지,
김혜민, 남서연, 박성재, 박소연, 박정현, 서혜수,
성창훈, 성혜원, 오민지, 윤지원, 이다경, 이수연,
임세리, 전혜진, 정희원, 조혜영, 차시온, 최슬지,
최이슬, 최희원, 한 솔, 함솔희, 홍현정, 황정민 님

후 원

• 평생회원이 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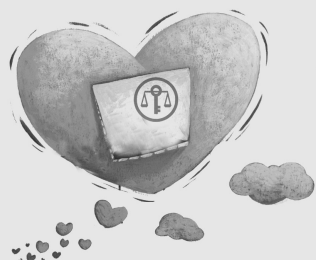
전성배 님

• 일반회원이 되신 분

장인복, 강영열 님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소·식

강릉지부

9월 3일~18일 강릉시 초·중학교 학생대상으로 양성평
등교육을 실시하였다. 6일, 11일,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가사조정 및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14일~15일
‘2018 강릉문화재 야행(夜行), 칠사당 체험프로그램’에서
가정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19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구리·남양주지부

9월 4일, 11일,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형사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경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하, 정이
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
며 상담 25건, 가사조정 9회를 실시하였다. 이혼 전·후 가
족관계회복사업으로 개별상담(77명, 116건), 부모교육 4회
를 실시하였다. 안혜림, 이승익, 전상훈, 나만수, 남지현,
이성관, 최연정, 박진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협력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 의무상담을 3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3회, 광주지방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9월 4일 성남지역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폭력예방순회교육(백현초, 분당초, 총181명)을 실시하였다. 공영서, 허정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9월 18일 인천연송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다. 19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최민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9월 4일 수원지방법검찰청 국민소통 옴부즈만에 참석하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8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최효재, 손난주, 이윤선, 박지현, 한승일, 서정식, 한두환, 최성중, 강은혜, 공영서, 전태우, 김현수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2회, 가사조정을 1회 실시하였다. 9월 4일, 18일 LH 전주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문승현, 임영곤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한지영, 최대일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9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8년 8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8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3,848건으로 본부가 7,138건, 지부가 6,710건이었다. 본부는 6,660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332건·소장 등 서류작성 84건·소송구조 62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342건·화해조정 1,269건·소장 등 서류작성 51건·소송구조 48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660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7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6%→0.9%), 부부갈등(2.5%→2.8%), 사실혼해소(1.1%→1.2%), 면접교섭권(2.7%→2.9%), 인지(0.9%→1.5%), 친생부인(0.7%→1.5%), 친생자존부(1.7%→2.2%), 입양(1.4%→2.1%), 파혼(0.3%→0.7%), 혼인무효·취소(0.8%→1.2%), 이혼무효·취소(0.2%→0.6%), 부양(1.3%→1.6%), 성변경(1.2%→1.4%), 미성년후견(0.3%→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채무(0.5%→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660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12건(18.2%), 전화상담 5,186건(77.9%), 통신 및 인터넷상담 262건(3.9%)이었다.

2018년 9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6,178						
법률상담 (5,509)						
면접	전화	통신	순회	서신	지상	
885	4,373	228	20	1	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554		73		42		

* 2018/9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28,285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138	1,212	5,186	262			6,660	332	84	62
강릉 (033) 652-9555	106	79	23				102	3		1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56	29	49				78	278		
군산 (063) 442-1560	148	56	45				101	47		
대구 (053) 745-4501	746	311	82	7		출장 260	660	85		1
대전 (042) 520-5258	211	46	156	1			203		8	
동해 (033) 535-0188	141	42	99				141			
목포 (061) 273-2514	145		142	1			143			2
부산 (052) 667-2314	486	96	200				296	189		1
성남 (031) 707-6661	338	158	81			출장 24	263	69	5	1
송도 (032) 834-1369	266	55	54	1			110	139	8	9
수원 (031) 243-4600	403	148	109	4		출장 70	331	67	2	3
순천 (061) 753-9910	188	69	117				186	1		1
안동 (054) 856-4200	170	20	103			출장 3	126	44		
울산 (052) 246-9568	127	52	55				107	10	5	5
익산 (063) 851-5113	252	69	182				251			1
인천 (032) 865-1120	359	64	109				173	180	1	5
천주 (063) 244-2930	373	145	144	39	13		341	22	6	4
청음 (063) 535-3705	154	50	103				153	1		
제천 (043) 644-5690	108	32	74	2			108			
중구 (02) 2238-6554	306	226	76				302			4
진주 (055) 746-7975	163	50	86				136	22		5
창원마산 (055) 261-0280	300	120	149	2			271	22	3	4
청주 (043) 257-0088	206	76	50				126	69	11	
춘천 (033) 257-4688	299	83	51	2		출장 163	299			
태백 (033) 554-4004	94	39	31			출장 24	94			
평택안성 (031) 611-4251	204	61	98			출장 21	180	21	2	1
포항 (054) 283-7555	61	13	48				61			
지부총상담	6,710	2,189	2,516	59	13	출장 565	5,342	1,269	51	48
총 상담	13,848	3,401	7,702	321	13	출장 565	12,002	1,601	135	110

** 2018/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0,752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15년 전 외도로 가출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422

담당 : 황미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8세)와 피고(남, 60세)는 198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혼인 후 1년 중 5개월은 일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생활을 반복하였다. 피고는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과소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 2003년경 피고는 월 1, 2회 집에 들어올 정도로 외박을 자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는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06.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심한 편이었는데, 동거 중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얼마 뒤 원고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의 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는 원고를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폭언하면서 원고를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의 가족들은 피고가 원고를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하여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 후 피고는 집에 CCTV를 설치하여 원고를 감시하면서 원고가 자녀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는 등 원고를 가족들과 단절시킨 채 치료도 받지 못하도록 악의로 유기하였고, 원고는 뇌출혈 이후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인지능력까지 떨어지고 말았다. 이에 피고와의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구가정법원 2018.07.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병중인 배우자를 유기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7-450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0세)와 피고(남, 37세)는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평소 원고에 대한 집착이

투자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489

담당 : 남기웅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7세)은 1990년경 20여 년간의 회사생활을 끝내고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건축 사업을 시작하였

다. 사업은 잘 되었고, 신청인은 1997년경부터 베트남을 오가며 해외투자 및 사업 확장을 해나갔다. 그러나 중국 회사들이 덤핑공약을 하면서 신청인은 적자를 보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건축 사업마저 경기침체로 어려워졌다. 이에 더 이상 해외투자를 지속할 수 없어 2003년경 중단하고 한국에서의 건축 사업을 재건하기 위해 3여년간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쟁에서 밀려 사실상 부도를 맞았다. 신청인은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내기 위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충당해 보았으나 자녀 앞으로 채무만 발생시키는 결과로 되었다. 결국 2006년경 폐업을 하였고, 신용불량상태에서 구직이 어려워 간헐적으로 일용근로를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고령으로 일용근로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이며 오갈 곳이 없어 배우자와 함께 처제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다. 이처럼 투자 및 사업실패로 인해 26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신청인은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08.24.)
채무자를 면책한다.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7-504

담당 : 김민정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1세)과 피신청인(남, 48

세)은 1999년 3월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여, 18세)을 두었다. 2002년 2월 8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했는데, 협의이혼 이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 사건본인은 디스크 병을 앓고 있고 당뇨 가능성도 있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신청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송구조를 받아 양육비 소송을 했고, 피신청인이 무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

청인이 신청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500만 원, 장래 양육비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다시 소송구조로 이행명령신청을 해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구조로 감치신청을 해 피신청인에게 감치 30일을 명하는 결정이 내려져 김천소년교도소에 감치가 되었다. 피신청인은 감치가 되자 감치결정이 내려진 달까지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고 출소 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또다시 감치결정 이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감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해 또 다시 소송구조를 받아 이행명령신청을 했다. 피신청인은 감치결정 당시 장래 양육비까지 포함하여 양육비를 다시 합의했고 합의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모두 지급했으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양육비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이행명령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미지급 양육비 72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 이행명령결정을 내렸다.

결과 : 결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8.09.04.)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6노단○○○호 양육비 사건의 2016. 6. 1.자 심판문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2018. 8.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500만 원을 분할하여 2018. 9.부터 2019. 1.까지 5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본 사건을 담당한 김민정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례입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교/육/강/좌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10월 8일, 10월 22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 · 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 및 학부모 · 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 · 중 · 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 · 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10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11월 22일	8. 분노 조절 장애
12월 27일	9. 외도에 대한 대처

등지고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10월 11일	평 안 : 고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 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symposium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일시
2018년 10월 25일(목)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인사말씀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현천옥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좌장 : 김상용(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이은영 (변호사,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토론발표

이동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노지선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장, 변호사)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법무사)
최수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